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열린 의회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황두영 의원 외 18명)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두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1
----------	-----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황두영·정근수·윤승오  
김용현·허 복·최병근  
김경숙·최덕규·김창혁  
황명강·손희권·배진석  
권광택·조용진·백순창  
박채아·정한석·차주식  
윤종호 의원(19명)

## 1. 제안이유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 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육(안 제5조)
- 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안 제6조)
- 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붙임

###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40, '24. 01. 09.)
- 나.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학생생활과(학생생활과-841, '24. 01. 11.)
-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학생생활과-841, '24. 01. 11.)
- 라.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학생생활과(학생생활과-841, '24. 01. 11.)

마. 해당부서 의견: 의견 없음

- 학생생활과(학생생활과-841, '24. 01. 11.)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

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4. “피해학생”이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 지  
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  
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교원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 발간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사항 등 지원 방안
5.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 사업,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
-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
-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
-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상담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5. 불법촬영물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 추진 및 제8조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청 및 성범죄 피해학생 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 비용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①항 2호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에 따른 추가 경비 발생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발생 가능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장학사 진여원(054-805-3507)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황두영		
심근식	심근식	
유철환		
김용현		
최복		
최병주		
김병숙		
최옥치		
김창혁		
강병강		
손리권		
버전석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서명부

의원명	서명	비고
권영희		
조영진		
백문상		
박재아		
장권익		
차주석		
이정민		